



즉시 배포용: 8/13/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슈퍼태풍 SANDY 피해 주택 소유자들이 FEMA 기금을 받고 연방 정부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주택 도시 개발(U.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장관 Castro가 자신의 집행 재량권을 사용하여 슈퍼태풍 Sandy의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Duplications of Benefits 규제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 이 규제에 따라 최근 법적 타협의 결과로 이제 FEMA 및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게 될 영향을 받은 뉴욕시민들은 NY Rising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요구 사항의 면제는 스마트한 정책일 뿐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몇 일 만에 슈퍼태풍 Sandy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HUD 장관 Castro는 더 나은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Homes and Community Renewal) 위원장 Jamie Rubin은 “Sandy, Irene 및 Lee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장기적 복구 노력은 부분적으로 HUD와 뉴욕주의 강력한 생산적 협력관계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경우에서 Duplications of Benefits 요구 사항을 면제하는 것은 튼튼한 지역 사회를 재건하는 데 계속 비중을 두어야 하는 시간, 비용 및 귀중한 자원의 측면에서, 연방 및 주정부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공 정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임무는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으며 직접적인 태풍 Sandy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며, 이것은 추가적인 어려움을 서로 나눔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부 산하 **Storm Recovery** 임시 책임자 **Lisa Bova-Hiatt**는 “이 경우에서 Duplications of Benefits 요구 사항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 자신들의 태풍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슈퍼태풍 Sandy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HUD를 대신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변상을

모두 충당하기 위해 할당된 직원의 시간과 자원 모두에 대한 이 자금과 비용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퍼태풍 Sandy, 허리케인 Irene 및 열대성 폭풍 Lee의 영향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HUD의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 Disaster Recovery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연방 태풍 복구 자금은 주택 소유주들이 같은 목적으로 연방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규제하는 Disaster Relief & Emergency Assistance Act 책임자인 Robert T. Stafford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NY Rising Housing Recovery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전 총 NY Rising 자금으로부터 충당되는 FEMA 및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등 연방 정부 자금을 차감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11,000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약 8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FEMA/NFIP에 대한 최근 법적 과제 및 FEMA 전 재평가를 위해 제기된 새로운 사건들로 인해 이제 보조금 또는 기타 자금을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NY Rising 프로그램에 자신들이 받은 자금을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수의 정부 기관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낳고, 이 파괴적인 폭풍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거의 3년 동안 고통 받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복구 기간의 지연을 낳을 것입니다.

스태포드 법(Stafford Act)은 기관의 책임자가 Duplications of Benefits 요구 사항의 면제가 연방 정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면제를 허용합니다. NFIP의 일부에 해당하는 총 4,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홍수 보험 지불금으로 받은 FE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의 개인 인원은 902명입니다.

주택 소유주들의 평균 보조금은 변호사 비용과 경비를 공제한 약 60%에 해당하는 20,000달러입니다. 기타 필수 공제로는 잠재적으로 주택 소유주 담보 대출 회사에 대한 상환액, 포함, 중소기업청 태풍 복구 대출 상환액, 그리고 제3자 대출자, 양도자 및 보험사가 포함됩니다. 이 상황이 케이스별로 이뤄질 경우 NY Rising은 적게는 \$0에서 많게는 \$8,000에 해당하는 902건의 복구 자금을 Duplications of Benefits로 분류하여 각각 다시 산출하고 잔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뉴욕주에 대한 배상액은 직원 시간과 자원에 대하여 150만 달러로 추정되는 이 절차의 관리 비용보다 잠재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추가 NFIP 보조금을 기대하며 FEMA가 자신들의 NFIP 청구를 다시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뉴욕에는 약 3,900명의 개인들이 있습니다. 추가 NFIP 자금을 받게 될 경우 이 개인들은 일차적으로 법적 절차 비용을 안고 주택 담보 대출 회사와 중소기업청은 물론 앞서 언급한 제3자 모두에게도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